

[Dart logotype]

달라스 지역 고속은행공사

결의문**달라스 지역 고속은행공사 집행위원회 결의문****규정 및 행동규범의 승인**

텍사스 주 교통조례 제452.105 조항은 의결에 따라 DART(DALLAS AREA RAPID TRANSIT, 달라스 지역 고속은행공사)에게 대중교통체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규칙, 대중교통체계의 사용과 공공기관으로서의 해당 당국의 서비스 및 운행요금, 도로통행료, 기타 부과금 등에 대한 규칙, 기관 소유지, 입차지, 또는 그 밖에 해당 당국이 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특혜 규정에 대한 규칙 등을 채택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며,

채택된 규칙의 통고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일반적인 발행부수가 있는 신문지상에 공표가 되어야만 하며,

법 규정에 준거하여 채택된 규칙과 규정은 2번째의 신문지상 공표일로부터 10일 후에 효력발생이 되도록 하며,

DART는 사용자들로부터 DART의 차량, DART의 시설 및 DART의 자산에 관한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게 되었던 바, 그러한 불만사항은 제안된 규정의 적용과 유사한 관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DART 사용자에게 의하여 조사된 최근의 보고서는 정류장의 안전, 보안 및 청결 등이 DART 사용자에게 염려사항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당 위원회는 사용자의 공공 안전에 관한 이해와 보안의식을 진작하는 목표설정을 최근에 채택하여 결과적으로 승차율 상승에 도움이 되도록 도모하였던 바,

동 제안 규정이 DART 사용자의 인식과 불만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목표설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운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달라스 지역 고속운행공사의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제1조 : 본 결의안에 첨부된 DART 차량, 시설물, 또는 소유지에 관한 일반인의 제반 규정과 규범을 포함한 DART 관리운영 규정의 채택.

제2조: 대표 및 이사회, 또는 피지명인에게 법에 따른 규정의 통고를 공표하는 권한의 부여.

규정 및 규범의 승인

[There is a signature]
Angie Chen Button
사무국장

[There is a signature]
Mark Enoch
위원장

문서승인:
[There is a signature]
DART 변호인

증명:
[There is a signature]
Gary C. Thomas
대표이사 사장

일자: 2007년 6월 26일

달라스 지역 고속은행공사

기관운영규정

제 1 장 - 일반규정

제 1 조 1 항. 기관과 목적

- (가) 달라스 지역 고속은행공사(DART)는 텍사스 주 교통 조례 제452장의 따라 창설되고 운영되는 지역운송기관이다. 이러한 규정은 텍사스 주 운송규범 제452장과 제452.105장에 따른 일반 기관 규정에 준거하여 제정되었고 그 규정은 DART의 이사회가 대중교통체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고, 대중교통체계의 사용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기관 서비스 및 기관 소유지, 임차지, 또는 그 밖에 해당 당국이 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특별취급 규정 등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다.
- (나) 이러한 규정은 DART의 피고용인에게 텍사스 주 운송규범 제452장에 따라, DART 이사회와 사장, 또는 임원에게 그들의 관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기관의 대표단을 또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조 2 항. 법령의 일반원칙과 해석

- (가) 이 규정의 문맥이 별도로 다르게 요구하지 않은 한 :
- (1) 단수로 표현되는 단어는 복수의 표현도 포함하며 복수로 표현되는 단어는 단수의 표현도 포함한다. 그리고,
 - (2) 특정한 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어떤 성이라도 포함하며 중성도 포함한다. 단어의 의미로서 지정이 되는 경우, 중성의 단어 표현은 두 가지의 성 모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 (3) DART의 피고용인에 의해서 취해지고 이행되는 하나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단어는 피고용인의 자유재량적이며 비 행정적, 또는 비 의무적이라는 의미로서 해석된다.
- (나) 이 규정에 포함된 각 장의 제목, 조항, 부속 조항 및 기타 다른 제목 등은 그 문맥으로서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단순한 작성상의 편이와 참조를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제목 아래에서의 본질적인 규정 내용을 정의하거나, 서술하거나, 범위를 넓히거나,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다) 별도로 달리 기술되어 있지 않은 한, 이 규정상의 요인, 기준 및 주제는 그

나열의 순서에서 어떤 선호도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1 조 3 항. 법령의 통제성과 분리성

- (가) 이 규정은 텍사스 주법에 따라 지역 정부 기관에 적용한다고 해석한다. 법률상 그 권한이 분명하고 사용 언어가 모호하지 않은 한, 소송, 또는 책임으로부터의 어떠한 면책포기도 이 규칙과 규정의 법 제정에 의하여 의도되지는 않는다.
- (나)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조항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게 그 조항 적용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효력상실이 된 조항 및 그 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조항이나 규정의 적용을 함에서, 그러한 효력상실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이 규정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다고 선포되었다.

제 1 조 4 항. 특별철폐

이 규정은 이 규정과 다른 DART 이사회의 종전 정책과 결의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진다.

제 1 조 5 항. 함축적인 철폐에 대항하는 법률해석

이 규정은 일반적인 DART 의 정책임으로, 그와 같은 법률해석이 합리적으로 회피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의 어떠한 일부라도 DART 의 후속 집행에 의하여 함축적인 철폐, 또는 수정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 1 조 6 항. 효력발생일

- (가) DART 이사회에서 채택된 각 규칙의 통고는 그 규칙이 채택된 후, 연속 2주 동안 매주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일반적인 발행부수를 가진 신문지상을 통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 (나) 그러한 통고는 제정된 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을 압축한 서술이어야만 하며, 또한, 그 규칙의 완전한 인쇄본이 어느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의 본사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리는 내용이어야만 한다.
- (다)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은 2번째의 신문지상 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장 - DART 차량, 시설물, 또는, DART 소유지에 관한 일반인 규범

제 2 조 1 항. 목적.

DART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하며 운영하기를 추구하고 있다. 모든 이용자의 안전과 안락함을 위하여, DART는 DART의 운송체계를 이용하고 또한, 운영하는 데 있어 다른 한편의 이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일반인을 위한 규범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다.

제 2 조 2 항. 금지된 행위와 법집행

- (가) 이 조항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되지 않은 한, 일반인의 DART의 차량, DART의 시설물, 또는 DART의 소유지 이용에 관하여 아래의 행위가 금지된다.
- (1) DART 차량, 또는 DART 시설물에서 씹는 담배를 포함하여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의 잔재물을 버리는 행위;
 - (2) DART 버스, 또는 DART의 경량열차 내에서 알코올 성 음료를 마시거나 용기의 뚜껑 마개가 개방된 상태로서의 알코올 성 음료를 소지하는 행위;
 - (3) 의료상으로 필수적이 아닌 한, DART 버스나 DART 경량열차 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 (4) 큰소리로 하는 대화, 불경스러운 말이나 무례한 모욕적인 언사, 또는 이어폰 없이 음악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자 장치물의 작동 행위 등을 포함하여 훼방적이고 주위를 어지럽히는 행위;
 - (5) 동물과의 동행 의도가 장애인을 도와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이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는 동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이 수용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수용 상자 안에 안전하게 동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어떠한 동물이라도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 (6) 어떠한 불법적인 무기를 지참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행위;
 - (7)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이나 휘발유, 석유, 혹은 프로판 가스 등과 같은 위험 물질을 소유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 (8)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9) DART의 차량이나 소유지에 글씨를 쓰거나, 표시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표면을 더럽히게 함으로써 파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서 차량이나 소유지를 파괴하는 행위;
 - (10) 자신을 남에게 강요함으로써 구걸을 하거나 간청하는 행위;
 - (11)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또는 자신의 향문이나 생식기를 노출하는 행위;
 - (12) 통제 물질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13) 적당 요금을 지불하였다는 증거 없이 DART의 차량에 탑승을 하는 행위;
 - (14) 운행시간 이후에 DART의 차량이나, DART의 시설물, 또는 DART의 소유지에 권한 없이 남아 있는 행위;
 - (15) 교통 수단 이외의 목적으로 DART의 시설물 또는, DART의

- 소유지를 권한 없이 이용하는 행위;
- (16) 교통정리 지역이나 보행자를 위한 통제 교차로, 또는 지정된 보행자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DART의 경량열차 궤도를 횡단하는 행위;
- (17) DART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 (나) 이러한 규정을 1회 또는 그 이상의 횟수로 위반하는 사람은 DART의 차량이나 DART의 시설물, 또는 DART의 소유지에서 즉시 떠나도록 DART 경찰관이나, DART 탑승요금 집행관, 또는 DART 버스/경량열차 선로 감독관에 의하여 경고를 받거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을 받은 후,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DART의 차량이나, DART의 시설물, 또는 DART의 소유지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거부를 한 사람은 DART의 경찰, 또는 기타 해당 법집행 기관에 의해서 취급될 수 있다. 규정 제2조 2항 (가) (13) 을 위반한 경우로서 적당 탑승요금을 지불하였다는 증거 없이 DART 차량에 탑승할 경우에, 그러한 상황은 텍사스 주 교통조례 제452.0611조에 따라서 취급된다.
- (다) 이 규정은 어떠한 연방법, 주법, 또는 지역 법이나 조례의 제한이나 충돌을 모색하지 않으며, 또한, DART 차량, DART 시설물, DART 소유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집행을 하는데 있어 그러한 법집행을 하는 어떠한 기관이나 법적 실체에도 그 법적 집행의 방지를 모색하지 아니한다.